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 규정, 무엇이 있나?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
2.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설
3.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4.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5.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
6. 기 타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세법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세법을 비롯한 법령의 개정규정은 그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정 법령을 검토할 때는 조문뿐만 아니라, 관련 부칙도 같이 살펴보아야만 개정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개정된 세법 규정 중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

(법인세법 §98의 5, 동법 시행령 §138의 5·§138의 6 및 소득세법 §156의 4, 동법 시행령 §207의 4·§207의 5 및 국조법 §29 ① 단서)

#### ▷ 신설내용

- ① 취지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② 원칙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하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③ 예외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

<b>사전승인</b>	본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법정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 대신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b>경정청구</b>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의 적용을 국세청

	<p>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못하고 국내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당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 포함)가 국내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법정서류를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p>
--	--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 2.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26의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b>제26조의 2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b></p> <p>「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p>

▷ **신설내용** : 소득세법상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바(동법 시행령 §23 ⑤), 특정금전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의 경우도 투자신탁과 동일하게 각종 수수료를 과세대상이익에서 차감함.

▷ **개정일자** : 2006년 2월 9일(대통령령 제19327호)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3.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① 5호 및 5호의 2)

개정 전	개정 후
<p><b>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b></p> <p>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p>	<p><b>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b></p> <p>-----</p> <p>-----</p>

<p>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한다.</p> <p>5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p>
---	--

▷ **개정내용**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함.

▷ **개정일자** : 2006년 2월 9일(대통령령 제19330호)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4.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수상오락서비스업,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 ⑧ 5호 및 7호)**

개정 전	개정 후
<p><b>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b></p> <p>① ~ ⑦ (생략)</p> <p>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p>	<p><b>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b></p> <p>① ~ ⑦ (생략)</p> <p>⑧ ----- ----- ----- ----- -----</p>

<p>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음식점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p> <p>⑨ ~ ⑯ (생략)</p>	<p>---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음식점업</li> <li>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li> <li>3. 부동산임대업</li> <li>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li> <li>5. <u>수상오락서비스업</u></li> <li>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li> <li>7. <u>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u></li> </ol> <p>⑨ ~ ⑯ (생략)</p>
--	---

▷ **개정내용**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면세가 되지 않는 업종에 수상오락서비스업·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추가함.

▷ **개정일자** : 2006년 2월 9일(대통령령 제19329호)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5.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  
(지방세법 §175 ④ 2호 단서)

개정 전	개정 후
<p><b>제175조 【납세지 등】 ① ~ ③ (생략)</b></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li> </ol>	<p><b>제175조 【납세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li> </ol>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 ----- -----
--	--

- ▶ **개정내용** : 복권의 당첨금을 은행 본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세입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세원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함.
- ▶ **개정일자** : 2005년 12월 31일(법률 제7843호)
-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함.

## 6. 기타

### (1) 저급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삭제(지방세법 §229 ① 1호 가목 단서, 동조 ②)

- ▶ **개정내용** : 종전의 저급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① 20개비당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쉐련 - 20개비당 40원의 담배소비세를 적용, ② 20개비당 판매가격이 100원 이하인 쉐련 및 50g당 판매가격이 100원 이하인 각련 - 영세율 적용)을 삭제함.
- ▶ **개정일자** : 2005년 12월 31일(법률 제7843호)
-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3호·5호·6호·14호 및 15호)

- ▶ **개정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국농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 ▶ **개정일자** : 2006년 4월 17일(재정경제부령 제504호)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3)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의 범위 조정(주세법 시행규칙 §9 1호)**

▷ **개정내용** : 주세 보전과 주류 유통질서의 확립 및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붙이도록 함.

▷ **개정일자** : 2006년 2월 9일(재정경제부령 제486호)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